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1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(2020. 4. 7.)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- 나. 코로나-19 지역사고 수습본부 대책회의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재난 발생시를 대비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기한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전자투표를” 을 “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“전자투표” 라 한다)에 의한 투표 등을” 로 수정하고, 후단의 “전자투표를” 을 “전자투표 등을” 로 수정(안 제4조제1항)
- 나.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서신, 우편,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고,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4조제5항)
- 다. 안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6조제4항)
- 라. 안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는 조항 신설(안제6조제5항)
- 마. “영 제59조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” 을 “위원장” 으로 수정(안제10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별첨 7
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)

다. 협의: 감사관, 정책·안전기획관,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

라. 기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 1
- 입법예고(2020.06.10.~06.30.) 결과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3
- 부패영향평가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4
- 성별영향분석평가: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별첨 5
- 학생인권영향평가: 별첨 6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전자투표를” 을 “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“전자투표” 라 한다)에 의한 투표 등을” 로, 후단의 “전자투표를” 을 “전자투표 등을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(이하 “재난” 이라 한다)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 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서신, 우편,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4조제5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·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영 제59조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” 을 “위원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0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영
제59조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
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
연임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제외한 교원위원을 서신, 우편,
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
수 있으며, 이 경우 제3항에서
정한 기한 내 선출이 어려울 때
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
④ 제4조제5항 후단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위원회 임기개시일을
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
임기는 2년 미만으로 정할 수
있다.

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
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·부위원장
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위
원장-----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【별첨 2】

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‘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’ 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관련법 개정으로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발생시를 대비하여 학교 운영위원의 선출방법, 선출기한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행정6급 김희연(02-3999-472)

【별첨 3】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제14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	해당 없음	

【별첨 4】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		
평가담당	감사관	행정6급	이지은
입안주관부서	참여협력담당관	통보일	2020.6.29.
관련조문	검토결과		조치사항
제4조 제6조 제10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개정안은 2020. 2. 25. 개정된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을 반영하여 위원선출 방법과 ‘전자적 방법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타당함 - 또한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, 재난 시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선출기한을 조정하고 전임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절차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- 단, 임기가 연장되어 동일(차수)위원의 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동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도 동일하게 연장되는지의 여부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<p>⇒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“원안동의” 함</p>		“원안동의”

【별첨 5】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			
관리번호	2020A서울교육017		
정책명	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
	부서명	참여협력담당관	
	담당자명	김희연	전화번호 02-3999-472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0년 6월 17일		
성별영향평가 내용 (참여협력담당관)	<p>「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에 앞서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 특성 및 균형참여 반영, 성별통계 구축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항목별 포인트를 점검함.</p>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</p> <p>「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,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대표회의,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선출 방법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며,</p> <p>소관 부서가 미리 점검한 바와 같이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.</p>		
	검토의견 반영계획서	해당 없음	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0년 06월 18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신지은/02-399-3910)</p> <p>참여협력담당관장 귀하</p>			

【별첨 6】

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
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	
담당부서	참여협력담당관	담당자	성 명 : 김희연 직 급 : 주무관 연락처 : 02-3999-472
평가담당	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	위원장 정병수	
해당조항	검토결과		검토결과
제4조 제6조 제10조	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(초·중등교육법시행령) 개정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 발생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, 임기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, 해당 조항에 대해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함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권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단권고
해당조항	참고의견		
	해당 없음		

【별첨 7】

관계법규

■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

제59조(위원의 선출 등) ①국·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.

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·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④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⑥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

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⑧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“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“국가기반체계“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 <2013. 8. 6.>